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15누11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1160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6. 11. 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건) 12,960,060원, 지방교육세(2건) 686,670원,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취득세(2건) 12,960,060원, 지방교육세(2건) 686,670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면제요건은 물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면제요건도 충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만으로 위 각 면제요건에 대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규정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갑 제2, 3, 4, 8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F은 E이 운영하는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산업기계, 정밀의료장치'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2. 21. B단지 내 토지인 C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공장 및 공장창고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3.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11. 25.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33.2㎡(2013. 10. 7. 신축한 부분 중 326.4㎡ + 2013. 11. 13. 증축한 부분 중 206.8㎡)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2) 취득세 면제 및 추징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업을 위해 사용할 용도로 2013. 10. 7.과 2013. 11. 13. 산업단지에 건축한 이 사건 건물 중 533.2㎡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3. 11. 25. 무렵 이를 임대함으로써 위 면제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고 있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F이 원고와 동종의 제조업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산, 고용 등의 창출 효과를 기대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수 있는 제한된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 것인데,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임대 부분이 동종 업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세제 혜택이 부여된 본래의 창업 사업인 원고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533.2㎡을 임대한 것은 원고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불과 1~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이를 임대한 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면제규정과 관련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취득세 등 감면은 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 조성 취지에 맞게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인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그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스스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것 역시 위 법령에서 예정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용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임대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각 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면제규정과 관련해서는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및 세액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그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중 533.2㎡의 취득이라는 과세대상과 관련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 면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액(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합계는 9,428,250원이다)에 20/100의 세율을 곱한 1,885,65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791,010원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판사 김홍섭

판사 류희상